

보도 일시	2022. 12. 28.(수) 조간 2022. 12. 27.(화) 11:00	배포 일시	2022. 12. 27.(화) 06:00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김원중 (044-200-5650)
		담당자	서기관 김도순 (044-200-5662)

수산물 유통·가공업 종사 청년도 정착지원금 받는다! - 청년어촌정착 지원 금액도 최대 월 110만원으로 증액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어촌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2022년 12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을 어촌에 유치하기 위해 2018년부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1983.1.1.~2005. 12. 31. 출생자) 중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2022년까지 어업과 양식업 창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정착자금도 10만원이 증액되어 월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동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 후,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원중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내년부터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 대상에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포함되는 만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청년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 사업내용

- (목적)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 자금을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고령화 문제 해소
- (지원대상) 만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창업(예정)자
- (지원규모) 231명(사전 조사), 1인당 최대 월 110만원 최장 3년 지원
 - * (어업경영 기준) 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 * (사용용도) 어업경영비·가계자금(어업분야 창업, 어촌정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조건 /시행주체) 국비 70%(농특), 지방비 30% / 지자체

□ 참고사항

- 사업체계 : 사업계획 수립 및 인원 배정(해수부) → 지원대상자 선발(시·군) → 보조금 교부(해수부) → 이행점검(시·군) → 성과평가(어촌어항공단)
- 연차별 주요 변경사항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대상	귀어인 (맨손어업 제외)	어업인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어업인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거주 청년어업인)		수산업경영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거주 청년어업인, 수산물 유통가공업)	
지급조건	최대 3년차까지 월 100만원 (3년차는 조건불리지역 한정)	3년차까지 차등 지원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3년차까지 차등 지원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지원인원	100명	169명	208명	206명	225명	231명
예산	604백만원	1,474백만원		1,560백만원	1,712백만원	1,926백만원

○ 사업대상자 현황(지역별)

(단위 : 명)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년	신청	124	-	1	-	2	5	-	24	8	64	6	11	3
	선정	100	-	1	-	2	3	-	17	8	54	2	10	3
'19년	신청	204	5	4	-	4	9	1	33	15	112	7	12	2
	선정	169	4	3	-	3	7	1	28	14	88	7	12	2
'20년	신청	266	6	10	2	6	8	-	27	20	131	13	39	4
	선정	208	5	6	2	4	8	-	27	17	100	12	25	2
'21년	신청	269	5	7	1	4	13	-	29	24	137	12	36	1
	선정	206	4	6	1	3	8	-	21	15	105	12	30	1
'22년	신청	267	3	1	4	3	25	-	24	19	134	13	38	3
	선정	225	3	1	2	2	19	-	24	18	106	11	37	2